

# 1. 개 황

## 가. 총괄사항

- (1) 예산현액은 853,476,781,000원이고, 세입조정액은 906,095,842,869원으로써 이중 총수입액은 883,772,522,845원, 총지출액은 646,258,064,604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7,514,458,241원이다.
- (2)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644,004,585,489원이고, 총비용은 582,776,061,237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1,228,524,252원이다.
- (3) 대차대조표의 자산액은 4,736,661,816,149원이고, 부채는 167,603,227,521원이며, 자본은 4,569,058,588,628원이다.

## 나. 의회의결사항

회 수	건 명	제출년월일	의결년월일
제32회 정례회	·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06.11	2007.07.09
제33회 정례회	·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11.05	2007.12.06

다. 행정관청인가사항 : 해당없음.

**라. 직원에 관한 사항**

○ 직원현황(정원/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청원경찰
전년도말인원 (2006.12.31)	2,891	628	21	792	54	12	1,264	17	103
	2,764	614	20	759	48	12	1,220	15	76
기간중	증	6			6				
	감	7			5			2	
		217	23	2	22		170		
	67	4	1	7		54		1	
당년도말인원 (2007.12.31)	2,680	605	19	770	60	12	1,094	17	103
	2,704	610	19	752	53	12	1,166	17	75

※ 계약직원은 정관상 정원으로 포함된 인원을 말하며, 년중 계속고용자는 기타(사용인부)란에 기재하되, 시간급 등 수시공용하는 일용직은 작성제외

○ 행정직,기술직 직급별인원(정원/현원)

(2007.12.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94	24	80	359	470	335	126
	1,381	21	90	367	483	315	105
행정직	605	13	31	131	217	163	50
	610	11	40	135	225	152	47
전산직	19			3	11	5	
	19			3	10	6	
기술직	770	11	49	225	242	167	76
	752	10	50	229	248	157	58

○ 관리자의 변동에 관한 사항

- 2007.1.5차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로 발령
- 2007.1.5차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발령

## 마. 조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제4466호)

- 공포일자 : 2007년 1월 2일

- 개정이유 :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결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고, 아울러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 제기기간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도법」 제3조 정의 내용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정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제2조)
- 기존에는 급수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공사비를 실제 공사비로 적용하였으나 다가구와 별동의 건물에 대한 수전분리 시에도 공사비를 실제공사비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제8조)
- 「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맞추어 정액공사비에서 계획급수지역 간선배관 비용을 제외시키고, 필요치 않은 일반행정관리비와 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하고 실제 소요되는 감리비를 추가함.(제9조)
-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역류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토록 함.(제14조의2 신설)
-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의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시 공사비 보조 및 용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 「수도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기준규정을 신설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함.(제36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31조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변경(당초60일→90일)함.(제44조제1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제4527호).

- 공포일자 : 2007년 5월 29일

- 개정이유

-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증가산금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도요금체납 가산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규정을 신설함.
-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증가산금제를 신설함.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최장 60월까지 부과
  -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증가산금 부과 제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제4548호)

- 공포일자 : 2007년 7월 3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광객 1,200만명 유치정책의 일환임.
-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538호)

- 공포일자 : 2007년 3월 15일

- 개정이유

-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도사업소도 일부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고, 우리시 수돗물의 감시항목이 기존 66항목에서 90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항목, 검사주기 및 기준, 수수료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사기관에 수도사업소 추가(상수도연구소장→상수도연구소장 또는 사업소장)(제68조, 제69조, 70조)
- 우리시 수돗물의 감시항목에 24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항목, 검사주기와 대상 및 방법, 수수료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함(별표 8 내지 10)
- 수도사업소의 검사기관 지정과 감시항목의 추가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검사 성적서 등 관련서식을 보완함(별지 제75호·제75호의 4 및 별지 제76호 서식)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555호)

- 공포일자 : 2007년 6월 2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급수설비 관리인의 자격을 이용자 중에서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의 제출서류 중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를 삭제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서 위임한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566호).

- 공포일자 : 2007년 7월 3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이에 합당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정수사업소)”를 “(아리수정수센터)”로 하고, “정수사업소장”을 “아리수정수센터소장”으로 함.
- “(상수도연구소)”를 “(상수도연구원)”으로 하고, “상수도연구소”를 각각 “상수도연구원”으로 함.
- “(수도자재사업소)”를 “(수도자재관리센터)”로 하고, “수도자재사업소장”을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함.

- 관련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정수사업소장”을 “아리수정수센터소장”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을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상수도연구소장”을 “상수도연구원장”으로 함.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차장”을 각각 “부분부장”으로 하고, “정수 사업소”를 “아리수 정수센터”로, “사업소의 장”을 각각 “센터의 장”으로 하며, “상수도 연구소”를 “상수도 연구원”으로, “연구소장”을 각각 “연구원장”으로 하고, “수도자재사업소”를 “수도자재관리센터”로, “사업소의 장”을 각각 “센터의 장”으로 하며, “각 사업소”를 “각 센터”로 함.
-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서울특별시수도자재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수도자재사업소장”을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577호).

- 공포일자 : 2007년 10월 0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자원분야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업무를 조정함.
- “총무부·경영부·시설부·생산부·급수부 및 수도관리부”를 “경영지원부·생산부·급수부 및 시설관리부”로 하고, “총무부장 및 경영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시설부장·급수부장·수도관리부장 및 생산부장”을 “생산부장·급수부장 및 시설관리부장”으로 함.
- 부분부장 밑에 감사과 및 물산업육성과를, 경영지원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경영과·교육홍보과 및 경리과를, 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및 기술심사과를, 급수부에 계획설계과·배수과·시설과 및 급수설비과를, 시설관리부에 누수방지와·시설관리과·지리정보과 및 전산과를 두고, 수도사업소의 “고객지원과·행정지원과”를 “고객지원과”로, “고객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을 “고객지원과장”으로 함.

- 관련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관사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총무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함.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경영부장”을 각각 “경영지원부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고객지원과장”으로 함.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시설부장”을 “시설관리부장”으로 함.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경영부”를 각각 “경영지원부”로 함.